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제정 2018. 12. 1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 및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 3. 25.)

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

2.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

3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위원장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대표의 경우 임기를 1년으로 정할 수 있다.

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.

제3조 (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
2.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
3.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심의회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회의록) 심의회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(개정 2019. 8. 1., 2021.4.21.)

제6조 (비밀유지의무) 심의회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운영세칙)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8. 12. 12)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자금운영위원회 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9. 8. 1)

제1조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재무처’를 ‘총무처’로 한다.

부 칙(2021.4.21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